서면답변서

소 속	평창군의회	질문위원	이만재 위원장
답 변 자	평 창 군 수 (산림과장)	답변일자	2006. 10. 20
회 의	제13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질문요지

○ 산림형질변경 허가서류 일체

답변내용

○ 수해복구 토석채취허가와 관련하여 이만재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산림형질변경 허가서류 일체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산림형질변경 허가서류 9부. 끝.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200원
종로세무서장
인세승인 제2003-1호

20060929-110516-1-001

SEOUL GUARANTEE INSURANCE COMPANY

인.허가보증보험증권

증권번호 제 118-051-200600000767 호

보험계약자	이상익	피보험자	581-83-90004 평창군수
보험가입금액	金 參億四阡壹百參拾九萬貳阡 원整 ₩341,392,000-	보험료	₩4,298,360-
보험기간	2006 년 09 월 29 일 부터 2008 년 01 월 31 일 까지 (490일간)		
보증내용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 예치금 보증		
특별약관	※해당사항없음		
특기사항	※허가받은 권리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인이 예치한 보증보험증권은 양수인 명의의 신규증권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허가권자가 복구설계서를 승인한 경우, 복구설계서의 복구기간 만료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행정행위내용

종류 산지전용 허가 및 신고
조건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
인.허가기간 2006년09월29일부터 2007년03월31일까지
인.허가장소 대화면 개수리 산128번지
인.허가번호
인.허가 또는 영업보증금액
₩341,392,000-

우리 회사는 인.허가보증보험 보통약관, 특별약관 및 이 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인.허가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실하므로 그 증으로 이 증권을 발행합니다.

※ 증권발급 사실 확인 안내

발 급 부 서: 118 잠실지점
부 서 장: 임동환
담 당 자: 조홍채
전 화 번 호: 02-3434-0021
주 소: 서울 송파구 신천동 7-25(월드타워11층)
취급 대리점: J56 열매
02-412-0021

2006 년 09 월 29 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74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사 장

증권발급사실 확인, 보험약관 및 보험금 청구시 보상진행사항 조회는 www.sgic.co.kr 의 사이버지점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증권의 내용이 주계약의 내용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내용이 일치되지 아니한 증권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14동계올림픽은 강원도 평창에서!"

평 창 군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77-6 방이동 그린파크@ 13층-1)

수신자 이상익 귀하

(경유)

제 목 토사채취허가 통보 및 허가증 교부안내(이상익)

1.산림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귀하께서 수해복구용 목적으로 토사채취허가 신청하신건에 대하여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한바 원의 타당하여 산지관리법제3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제40조제3항 규정에 의거 허가하고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고.

3. 산지복구비용을 기일내에 납부하시고 허가증 수교후 작업착수하시기 바라며.

4.특히 붙임 허가조건,유의사항,타법령에 의한 인허가 이행준수 및 재해예방, 산지복구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림복구는 반드시 사전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설계서대로 시공하시고 준공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가.허가증 "안" 및 허가조건1부
나.유의사항 및 복구비예치통지서1부 끝.

평 창

수신자

지방임업서기보 이남기 산림관리담당 이건호 산림과장 김남식 전결 09/26 부군수 [illegible]

협조자

시행 산림과-12045 2006.09.26 접수

우 232-807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본관4층 / http://www.happy700.or.kr
전화 330-2425 전송 033)330-2591 / 5hanlim@hanmail.net / 공개

"2014동계올림픽은 강원도 평창에서!"

평 창 군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토사채취허가사항 알림

1.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 산128번지 토사채취허가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 토사유출 및 재해우려, 연접지 경계침범 등 위법사항 발견시 우리과(산림과)로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허 가 자	허가지	허가면적 (㎡)	허가목적	허가기간	비 고
이 상 익 (011-470-4565)	대화면 개수리 산128	23,610	긴급수해복구용 토사채취	2006.09.~ 2007.03.31	

끝.

평 창 군

수신자 환경복지과장, 대화면장

지방임업서기보 이남기 산림관리담당 이 [illegible] 산림과장 김남식 전결 09/26 부군수 [illegible]

협조자

시행 산림과-12045 2006.09.26 접수
우 232-807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본관4층 / http://www.happy700.or.kr
전화 330-2425 전송 033)330-2591 / 5hanlim@hanmail.net / 공개

토 석 채 취 허 가 증

허가를 받은자	①성 명	이 상 익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77-6 방이동그린파크@ 13층-1		
산 지 소유자	④성 명	이 상 익	⑤주민등록번호	
	⑥주 소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77-6 방이동그린파크@ 13층-1		
⑦산 지 소 재 지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 산128번지		
⑧벌 채 구 역 면 적		23,610 ㎡		

⑨토 사 허 가 내 용	토사채취장	23,610 ㎡	입목재적	수종별	본수(본)	재적(㎥)
	산물처리장	㎡		소나무외1	729	66.39
	진 입 로	㎡				
	관리사무실	㎡				
	기 타	㎡				
	합 계	23,610 ㎡				
	종류 및 수량	마사토, 188,391㎥				
	반출기간	2006. 9. . - 2007. 03. 31.				
	채취방법	인력 및 장비				
	용 도	긴급수해복구용 토사채취				

산지관리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제5항(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토사채취허가(연장허가)를 합니다.

2006년 09 월 일

평 창 군 수 인

허 가 조 건

1.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 허가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작업에 착수하고 착수일자를 기재한 작업착수서를 평창군(산림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중 작업을 중지하거나 재개한 때에는 즉시 작업중지일자 또는 재개일자와 그 사유를 기재한 작업중지서 또는 재작업착수서를 평창군(산림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허가를 받은 사람은 산지의 복구를 위하여 미리 복구비를 예치하된 허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차년도 이후의 복구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발부하는 복구비예치통지서에 따라 예치한 후에 굴취·채취하여야 합니다.

4.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의 만료일전이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분적인 복구작업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5. 예치된 복구비는 복구설계서에 따라 복구를 완료한 후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복구상황을 확인하고 완전히 복구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반환하며 기간내에 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치된 복구비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복구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6. 허가를 받은 사람은 채석으로 인하여 발생할 재해에 대하여 사전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7.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적지복구를 완료한 때까지 허가구역 및 그 연접한 산지의 파해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8.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주위에 잘 보이도록 여러 개의 적색위험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9. 허가구역 입구에 다음과 같은 표지판을 설치하되, 그 규격은 가로 90센티, 세로 60센티미터, 높이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1. 임야구분	: 사 유 림
2. 채취장소	: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 산128번지
3. 허가연월일 및 번호	: 2006. . . 허가번호 2006- 호
4. 허가자	: 평 창 군 수
5. 허가를 받은 자	: 이 상 익
6. 허가면적	: 23,610 ㎡
7. 토사채취수량	: 마사토, 188,391㎥
8. 토사채취용도	: 긴급수해복구용 토사채취
9. 허가기간	: 2006.. 09 . ~ 2007. 03. 31.

10. 허가를 받은 사람은 위의 각 항외에 관계법규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채취한 산물의 반출은 허가기간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반출을 완료한 때 또는 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즉시 채취 및 반출토사의 수량조서와 허가증을 첨부한 반출종료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여 합니다.

12. 토사채취 허가지와 연접된 경계(완충구역 포함)를 침범해서 산지전용해서는 안됩니다.

13. 허가를 받은 자는 토사채취로 인하여 발생할 위해에 대하여 사전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4. 토사유출방지시설·낙석방지시설·옹벽·침사지(沈砂池) 및 배수시설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15. 그밖에 산림기능의 유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6. 토사채취허가와 관련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17. 토사채취허가와 관련하여 타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안됩니다.

18. 토사채취허가지내 생립된 임목은 조경수목으로 존치 또는 벌채하여야 하며 굴취 및 토사를 타 용도로 부산물 생산량을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19.**기타 타법에 의하여 인·허가(신고포함)사항에 대하여는 사전(공사시행전)에 인·허가(신고)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20. 허가사항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변경허가를 득한 후 사업 시행해야 합니다.

21. (어구해석) 본 허가조건(유의사항)의 어구해석에 이의가 있을 시는 허가권자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22. 채취방법은 채취지역의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계단식으로 채취(복구)해야 합니다.(경관유지를 위하여 차폐림 등 차폐시설을 설치해야 함)

23. 토사채취로 인한 인접지의 붕괴방지를 위하여 허가구역의 경계로부터 안쪽으로 너비 10미터의 완충구역을 설정해야 하며, 이 경우 동 구역 안에서는 채취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24. **자연재해대책법 제52조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사항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및 예방에 관하여 ⇒ 우기시 토사유출로 하류지역의 농업용 시설등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되므로 가침사지,도수로등을 반드시 설치
- 점·성토면의 토사유출 및 사면붕괴 방지대책에 관하여 ⇒ 사업계획과 일치하게 나무심기, 줄파종, 산마루측구 정비등이 반드시 이행

유 의 사 항

1. 허가증을 교부받기 전에는 산지전용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2. 허가를 받은 사람이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때에는 복구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은 사람은 산지를 전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재해에 대비하여 사전 예방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4.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사람은 산지전용허가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구공사를 착수 전에, 산지전용허가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의 기간이 만료된 후 15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복구설계서대로 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5. 산지전용된 산지의 복구비는 허가를 받은 사람이 부담하여 복구하여야 합니다.
6. 허가를 받은 사람은 산지전용기간중이라도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산지관리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7.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후 기간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치된 복구비(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등을 포함합니다)로 대집행합니다.
8.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나.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한 경우
   다.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산지관리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소된 복구비를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라.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마. 허가를 받은 사람이 법 제2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바. 그 밖에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9.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허가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NO. 제 호

복구비예치통지서

1. 위 치 : 대화면 개수리 산128번지
2. 면 적 : 23,610 ㎡
3. 허가신청(신고)자
 가. 성 명 : 이 상 익
 나.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77-6
 방이동그린파크@ 13층-1
 다. 주민등록번호 :
4. 복구비용 예치내역
 가. 예치총액 : ₩341,392,000원
 나. 이번에 예치할 금액:₩341,392,000원
5. 납부 기일·장소
 가. 납부기일 : 2006.10.26일까지
 나. 납부장소 : 평창군청 산림과

산지관리법제38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비를 예치할 것을 통지합니다.

2006 년 09월

평 창 군 수

※ 단,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시는 허가(협의)기간을 증권 발부일부터 ~ 2007. 03. 31일로, 보험기간은 증권 발부일부터 ~ 2008. 01. 31일자로 하여 증권으로 발부하여 예치하여야 합니다.

NO. 제 호

복구비예치영수증

1. 성 명 : 이 상 익
2.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77-6
 방이동그린파트@ 13층-1
3. 주민등록:.
 번 호

4. 복구비예치금액: ₩341,392,000원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06 년 월 일

평 창 군 수

토석채취허가기준(협의)에 따른 심사내역

1. 신청 개요

ㅇ 신 청 자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177-6 방이동그린파크아파트13층-1 이상익
ㅇ 위　　치 : 대화면 개수리 산128번지
ㅇ 총 면 적 : 23,610 ㎡
ㅇ 사업목적 : 수해복구용 토사채취

2. 편입 산지현황

ㅇ 소유별·산지구분별 면적 총괄

(단위 : ㎡)

합계	소 유 별			산지구분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보전산지			준보전 산 지
				계	임업용	공익용	
23,610			23,610			-	23,610

※ 필지별 내역 : 붙임1과 같음

ㅇ 산림현황
- 임　　상 : ■침엽수림 □ 활엽수림 □ 혼효림
- 주요수종 : 소나무외1종
- 수　　고 : 12/18-14
- 평균 가슴높이지름 : 14/30~ 22
- 임　　령 :26/50-38

ㅇ 산림관련법상 제한사항

(단위 : ㎡)

보안림	사방지	임업진흥권역	채종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5년이내 조림지	임 도 (시설연도)	산지전용제한지역	기 타
-	-	-	-	-	-	-	-	-

※ 필지별 내역 : 붙임2와 같음

3. 토사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산지관리법 제36조제3항 및 제43조4항 관련 별표8)

허가기준	적용 범위	세 부 기 준	검 토 의 견
1. 산지의 형 태	공통	가.지형 석재 또는 굴취·채취(이하 이표에서 "채취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지역(이하 이표에서 "채취지역" 이라 한다)은 당해 산지의 표고의 100분의 70 이하일것. 다만,채취등을 하므로서 일단의 면적이 절개사면없이 30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경사도 채취지역의 평균경사도는 30도 이하이어야 하고,채취등을 완료한후 절개사면의 기울기(비탈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한다)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채취등을 하므로서 절개사면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건축용 석재인 경우에는 1 : 1.0 (2)건축용 석재가 아닌 석재의 굴취·채취인 경우에는 1:05 (3)토사의 굴취·채취인 경우에는 1:1.0	적 합
2. 임목의 구 성	공통	가.입목의 축적 채취지역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임업통계연보상의 관할 시군 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것. 다만,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솎아베기 또는 벌채를 실시한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솎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입목의 분포 채취지역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일것	적 합

3.허가면적	공통	가.석재의 채취를 위한 허가신청의 경우에는 그 채취하고자 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허가를 받아 채취를 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된 산지의 전체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잔여산지를 계속 채취하므로서 비탈면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 (3)채석지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석재를 굴취·채취하여야 하는 경우(법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에 한하여 허가한다) (4)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나.경관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능선너머 반대사면의 하단부까지 채석면적에 편입되도록 하는등 채석후 발생하는 비탈면이 가장 최소화되도록 허가면적을 신청할것.	적 합
4.완충구역의 설 정	공통	가.완충구역의 설정 석재 또는 토사의 채취등으로 인한 연접지의 붕괴방지를 위하여 제3호가목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구역의 경계로부터 안쪽으로 너비 10미터의 완충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구역안에서는 채취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토사유출방지시설 석재 또는 토사의 채취등으로 인한 토사유출방지를 위하여 물이 고이는 지역에 침사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적 합
5.채취등의 방 법	공통	가표토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취지역의 상단부에서부터 하부로 계단식으로 채취등을 하거나 비탈면 없이 평탄지가 되도록 채취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단식으로 채취등을 하는 때에는 하나의 계단에 대한 채취등이 완료된후 다음 계단에 대하여 채취등을 하여야 한다. 나.지하로 채석하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에 반영된 되메우기용 토사의 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하여야 한다.	적 합

4. 복구비 예치 여부

- ㅇ 관련조문 : 산지관리법 제38조, 시행령 제46조, 시행규칙 제37조 내지 제40조
- ㅇ 시설물설치·특수공법적용을 위한 추가예치 여부 :
- ㅇ 산출내역 :ha당 10~19일 경우 147,406천원 ×2.3160ha=341,392,000원
- ㅇ 산 출 액 : 341,392,000원

10. 종합의견

- ㅇ 경계표지의 여부 및 현지일치 여부 : 현지와 부합함
- ㅇ 의견 : 지난 2006.7.14~2006.7.20자 내린 집중호우 피해유실지에 대하여 토사채취허가 신청된 것으로서

- 방림면장으로부터 재해복구용 토사채취 추천되었고 1회방문 민원 실무종합심의회 검토조서에 저촉사항 없음으로 허가조건과 유의사항 등을 명시하고 특히 재해우려 없도록 공사시 배수로정비, 토사유출 방지시설 등 이행하는 조건으로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사일 : 2006. 09. 25

조사자 : 지방임업주사 이건훈(인)

결재	기	담 당	과 장	군 수
			전 결	

평창군수 귀하

1회 방문민원 실무종합 심의회 검토조서

○ 민 원 명 : **토사채취허가신청서**
○ 소 재 지 :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 산128번지
○ 목　　적 : 긴급수해복구용 토사채취
○ 신 청 인 : 이 상 익
○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77-6 방이동그린파트@ 13층-1
○ 접수일자 : 2006.09.15　　　　처리기간 : 2006.10.24
○ 심의일자 : 2006.09.15

『 민원1회 -방문 처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무종합 심의회에서 심의함.

<u>심 의 사 항</u>

관련법규	검토부서	검 토 내 용	결과 가	결과 부	검토자 직	검토자 성명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지 역 도시과	- 저촉사항 없음	○		행정6급	[illegible]
건축법	〃					
주택법	〃					
수도법	상하수도 사업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환경복지과					
대기환경보전법	〃	· 동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대상임	○		환경9	[illegible]
소음 및 진동 규제법	〃	· 동법 제[illegible]조 규정에 의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임	○		〃	〃
자연환경보전법	〃					
환경정책기본법	환 경 보호과	저촉사항 없음 ~~-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대상~~	○		환경6급	[illegible]
하 천 법	건설과					
소하천정비법	건설과					
공유수면관리법	건설과					
문화재보호법	문화관광과					
도 로 법	건설과	저촉사항없음	○		토목6급	[illegible]
지하수법	건설과					
자연재해대책법	재난안전관리과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대상임			토목6	[illegible]

농지법　농정과

4447
2006. 9. 15

06.10.02

토사채취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 명	이 상 익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77-6 방이동그린파크@ 13층-1 (☎011-470-4565)		
④당해산지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관계			소유권보존	
산 지 소유자	⑤성 명	이 상 익	⑥주민등록번호	
	⑦주 소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77-6 방이동그린파크@ 13층-1		
⑧산지 소재지		대화면 개수리 산128번지		
⑨벌채구역면적		23,610㎡		

⑩신청 산지 면적		
	토 사 채 취 장	23,610㎡
	산 물 처 리 장	㎡
	진 입 로	㎡
	관 리 사 무 실	㎡
	기 타	㎡
	합 계	23,610㎡

⑪종류 및 신청량			⑫입 목 재 적			
	토사의 종류	신청량		수 종 별	본 수	재 적
	마사토	188,391㎥		소나무 외	729본	66.39㎥

⑬용 도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용
⑭벌 채 기 간	2006 년 09 월 ~ 2007 년 08 월 30 일
⑮반 출 기 간	2006 년 09 월 ~ 2007 년 08 월 30 일
⑯채 취 방 법	장비

산지관리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토사채취 허가를 신청합니다.

2006 년 09 월 일

신청인 :이 상 익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구비서류

수 수 료

평창군수입증지

1. 사업계획서(토사채취허가구역현황, 토사채취방법 및 연차별 생산·이용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 삭제(2005.8.24)
3. 토사채취를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지적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토사채취허가구역 및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 8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연차별 토사채취 구역실측도 1부
6.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7. 산림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입목축적조사서 1부
8. 복구방법이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9. 산림법시행규칙 제9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계·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 설계서 1부
10.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골재용 토사채취허가의 경우에 한합니다)
11. 「산림법 시행령」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공학기사. 토목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 작성한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1. 사 업 개 요

1) 사업취지

가) 사 업 목 적 :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용 토사채취

나) 사업장소재지 :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 산128번지

다) 사업장 주변현황

- 본 신청지는 개수리에서 유포리 방향으로 진행하다 향동 맞은편 금번 수해로 파손된 박스형교량을 지나 전면에 위치한 곳으로서 주변은 농경지 및 일부 주택등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임.

라) 사업취지

- 본인이 토사채취를 하고자 신청한 지역은 금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변에 유실된 지역이 많은 곳으로서 재해복구용 토사가 꼭 필요로 하나 재해복구용 토사가 부족하여 금번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토사채취허가를 득하고 재해복구에 박차를 가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검토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장 현황

▶ 소재지 :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 산128번지

지 번	지 적	신청면적	비 고
산128	27,505	23,610	이 상 익
합 계	27,505	23,610	

2. 토지이용계획

명 칭	수 량	비 율(%)	비 고
토사채취장	23,610㎡	100.00	
토사채취량	188,391㎥		

3. 사 업 기 간

1) 착 공 : 2006 년 09 월

2) 준 공 : 2007 년 08월 30일

4. 자금조달계획

단위: 천원

구 분	단위	수량	소 요 금 액				비 고
			자 부 담	금 융 권	기 타	계	
복구공사	식	1	55,600			55,600	
계			55,600			55,600	

5. 진입로 확보계획

-기존 도로를 이용하고자 함.

6. 산지공사계획

1) 부산물 생산현황

구 분	규 격	부산물현황	비 고
벌채수종	(12-30)	소나무외	
굴채수종		없음	
석재및토사	토사	188,391㎥	

2)절성토면 면적

지 번	지 적	신청면적	경 사 면 적			비 (%) 율	비 고
			절 토	성 토	계		
산128번지	27,505	23,610	작업시 법면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하였음.				

3) 자연경관 및 산지훼손의 최소화

▶ 주변 자연경관을 최대한 이용하여 사업을 시행시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업을 실시코져 함.

4) 재해방지시설계획

▶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씨뿌리기 및 나무(잣나무2-2-3)를 식재하여 인근에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시설개요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나무식재	2-2-3	주	5,902	

5) 토사처리계획

금번 토사채취허가를 득하고 발생되는 사토는 호명리 재해복구용으로 전량 이용하고자 함.

6)지형변화 및 사면처리계획

가)지형변화의 최소화

금번 토사채취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절토 공사시 현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표고가 높은 봉우리 부분을 채취하여 주변으로 경사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하였음.

7) 잔여산지 보전계획

원형(자연)되로 존치 보전할 계획임.

7. 기 타

사업시행에 있어 관계법규 및 제반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특히 인근 산림으로의 월경이 없도록 주의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기타 민원 발생시는 본인가 책임지고 해결할 것임.

발급번호 : 060919-110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 명	동호	주 소	

대상지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시/군/구	읍/면	리/동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	산128	임	27505

확인내용				
	1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관리지역]
			용도지구	[해당없음]
			용도구역	[해당없음]
			도시계획시설	[해당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2	군사시설		[해당없음]
	3	농 지		[해당없음]
	4	산 림		[해당없음]
	5	자연공원		[해당없음]
	6	수 도		[해당없음]
	7	하 천		[해당없음]
	8	문화재		[해당없음]
	9	전원개발		[해당없음]
	10	토지거래		[해당없음]
	11	개발사업		[해당없음]
	12	기 타		[해당없음]

귀하의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사항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06 년 9 월 19 일

평 창 군 수

수수료
1천원 (관할시·군 또는 구가 아닌 경우에는 2천원)

임야도 등본

발급번호	20060828-0010-00001	처리시각	16시 41분 41초	작성자	김태한
토지소재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	지 번	산128	축 척	등록:1/6000 출력:1/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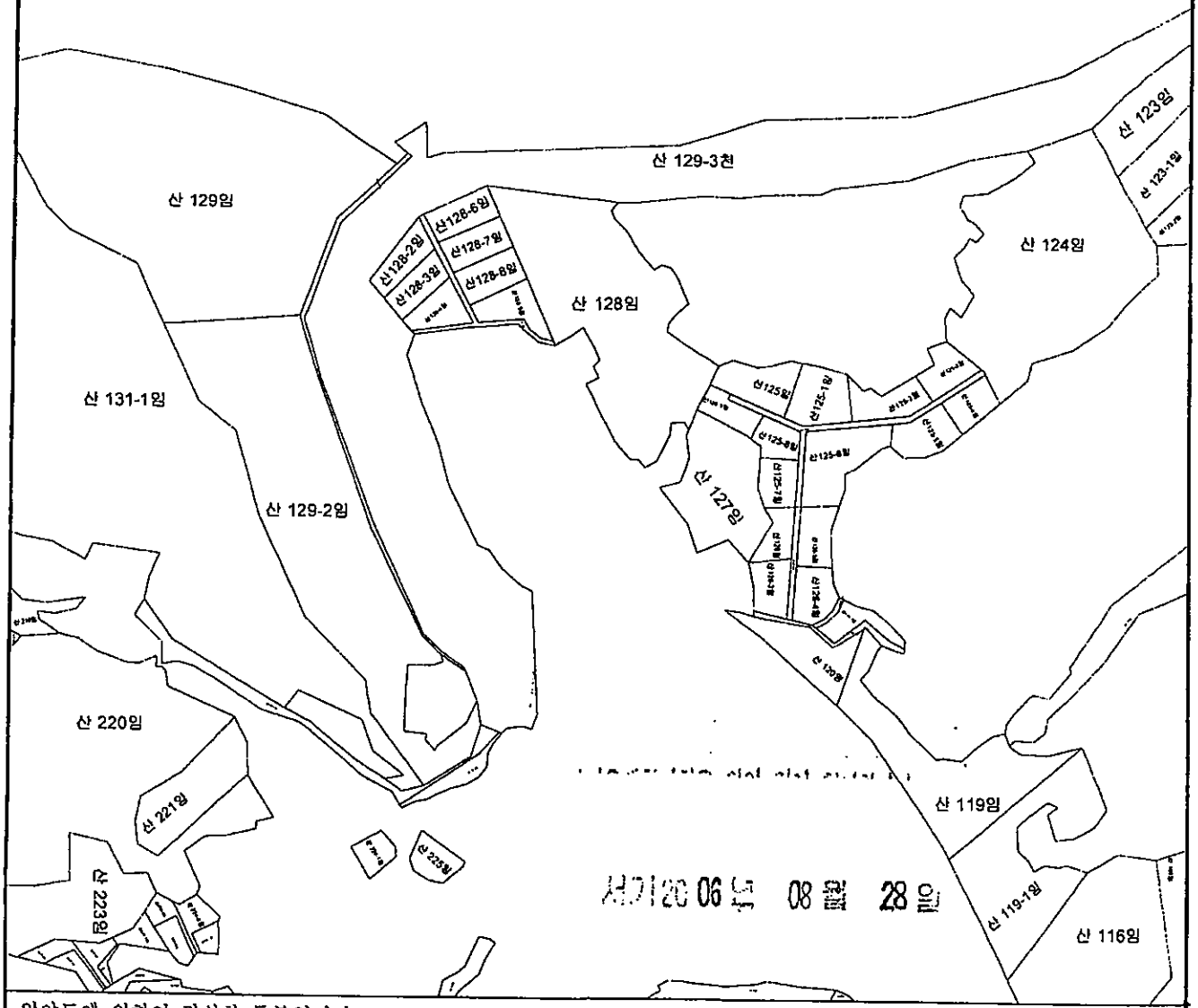

임야도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이 도면등본으로는 지적측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06년 8월 28일

평 창 군 수

[011427600200608281641411O6.11.0.73]-[1/1]

임야 대장

고유번호	4276033023-20128-0000		
토지소재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		
지 번	산 128	축 척	1:6000

도면번호	3	발급번호	20060901-0070-0013
장 번 호	1-1	처리시각	10시 11분 50초
비 고		작 성 자	김태한

토 지 표 시

지 목	면 적 (㎡)	사 유
(05) 임야	*27,505*	(20)2003년2월6일 분할되어 본번에 -2를 부함
		--- 이하 여백 ---

소 유 자

변 동 일 자	주 소	
변 동 원 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2003년7월30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177-6 방이동그린파크(아)13층-1	
(03)소유권이전	이상익	440628-1******
	--- 이하 여백 ---	

등급수정연월일	1981년8월26일 수정	1984년7월1일 수정	1990년1월1일 수정	1991년1월1일 수정				
토지등급 (기준수확량등급)	17	10	66	67				
개별공시지가기준일	2002년1월1일	2003년1월1일	2003년7월1일	2004년1월1일	2005년1월1일	2006년1월1일		용도지역 등
개별공시지가(원/㎡)	156	156	159	182	267	304		

평창군청 500원 2006.09.01 PC003

임야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2006년 9월 1일

강원도 [illegible]수

재해복구용 토사채취 추천서

지난 집중호우(7.14 ~ 7.18)로 인하여 농경지·도로·제방 등 유실되어 다음과 같이 재해복구용 토사가 꼭 필요한 지역으로 마을공동 토사채취 대상지로 추천하오니 토사채취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토사채취 신청자 주소·성명	산림내 토사채취 할 장소	토사채취 복구할 장소	지역주민 의견수렴 여부	농경지등 복구할 면적(ha)					비고
				계	농경지	도로	제방	기타	
자승건설 개발(주)	용평면 재산리 산 205 " 산 205-2	방림면	여	45	45				
김기주	용평면 재산리 산 183 " 산 183-1 " 산 183-2	방림면	여						
한인수	용평면 재산리 산 212 " 산 212-1 " 산 212-4 " 산 205 " 산 205-2	방림면	여						
이성배	용평면 재산리 산 183-3 " 산 183-4	방림면	여						
김길상	용평면 재산리 산 212 " 산 212-1 " 산 212-2 " 산 212-3 " 산 212-4	방림면	여						
이상익	대화면 개수리 산 128	방림면	여						

- 토사채취 신청자 또는 토지소유자 토사 무상회사 여부 : 여
- 마을공동 복구추진위원회 승낙여부 : 여

2006. 9.

방 림 면

"2014동계올림픽은 강원도 평창에서!"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수신자 평창읍 하리 동호측량토목설계공사

(경유)

제 목 토사채취(수해복구용)허가 신청에 따른 토양검정 결과 통보

1. 동호 2006-31('06.09.14)호와 관련된 문서 입니다.

2. 관련호로 의뢰하신 토사채취(수해복구용)허가 신청에 따른 토양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 합니다.

토지내역						검정결과		
읍면	주소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	pH	점토함량	검토의견
진부면	호명리	산103	4,300	임	서울,서초구 방배동 775-1 윤현숙외 1	6.2	2.0	점토함량이 많이 부족(기준량 13%) 한 후보지는 논 객토원으로는 이용할수 없으며, 밭객토원으로 이용시에도 객토한 토지에 대하여 토양검정후 작물을 재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104	24,400		서울,송파구 석촌동 459-1 김필화외 5			
대화면	개수리	산128	27,505	임	서울, 송파구 방이동 177-6 이상익	5.3	11	
용평면	재산리	산205, -2	55,150	임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0-1 건우빌딩 6층 자승건설개발(주)	6.4	2	
		산183, -1	27,068	임		5.5	8	
		산183-2,-3, -4	31,564			6.5	8	
		산205,-2 산212,-1,-4	28,000	임		5.4	15	
		산212,-1,-2, -3,-4	28,000	임		5.2	10	
봉평면	무이리	산149	2,526	임	대화면 신리 이해란	7.0	0	
		산149-6	2,565		강릉시 주무진읍 주문진리829-109 강봉구외6			
		산149-8	1,706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263-4 송영회			
		산149-9	4,018		서울,강서구 가양동 448-1 2 이석정외 2			
		산149-10	5,266		경기,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82 신재열외 5			
		산149-11	839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263-4 송영회외 1			
		산149-17	1,706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263-4 송영회			
		산149-18	1,174		서울, 광진구 중곡동 613-9 양혜영			
		산149-19	1,570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323 서규석			

끝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

수신자

지방농촌지도사 윤병수 환경농업담당 조규명 기술개발과장 백순자 전결 09/18

협조자

시행 기술개발과-5019 접수

우 232-803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여만리 357-6 / www.happy700.or.kr

전화 033-330-1340 전송 033-330-2438 / hl2xnr@lycos.co.kr / 공개

	설 계		인					

2006년도

이상익 복구설계 예산서

◆공종

나무식재(2-2-3) : 5,902 주

잔디식재(줄떼) : - ㎡

총 공 사 비 : 오천오백육십만원 (55,600,000)

도급예정액 : 오천오백육십만원 (55,600,000)

관급자재대 : ----

이상익복구설계기초내역서 (1)

공 종	규 격	수 량	단위	총 액		노 무 비		재 료 비		경 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1.토 공		1	식		21,809,522		18,716,612		1,062,450		2,030,460	
2부 대 공		1	식		878,800		269,450		389,400		219,950	
									-			
									-			
									-			
계					22,688,322		18,988,062		1,451,850		2,250,410	
간접노무비		10.80	%		2,050,494	18986062 * 10.8% = 2050495 (직접노무비의 14%)						
기 타 경 비		5.00	%		1,943,322	(18986062 + 2050494 + 1451850 + 16378050)* 5.0% = 1943323 (노무비+직,노비+재료비+사급자재(골재대제외)의 5.0%)						
안전관리비		2.48	%		913,035	(18986062 + 1451850 + 16378050)* 2.48% = 913036 (직노무비+재료비+관급자재(골재대제외)의2.48%)						
산재보험료		2.90	%		610,060	18986062 + 2050494 * 2.90% = 610060						
건강보험료		0.52	%		98,728	18986062 * 0.52% = 98728						
연금보험료		0.99	%		187,962	18986062 * 0.99% = 187962						
환경보전비		0.03	%		68,065	(18986062 + 1451850 2250410)* 0.300% = 68065 (직노무비+재료비+산출경비의0.3%)						
순 공사비					28,559,988							
일반관리비		4.70	%		1,342,319	28559988 * 4.70% = 1342319 (순공사비의4.7%)						

이상익복구설계기초내역서 (2)

공 종	규 격	수 량	단 위	총 액		노 무 비		재 료 비		경 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이 윤		15%	%		4,267,568	28559988 - (순공사비-재료비+일반관리비의 %)		1451850 +	1342319 *		15% =	4267568
계					34,169,875							
사급자재대		1	식		16,378,050							
골 재 대		1	식									
공 급 가 액					50,547,925							
부가가치세		10	%		5,052,075	50547925 * 공급가액의 10%		10% =	5,052,075			
도급예정액					55,600,000							
총 공 사 비					55,600,000							

이상익복구설계기초내역서 (1)

공 종	규 격	수 량	단위	총 액		노 무 비		재 료 비		경 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1.토 공												
벌 목		23,610	㎡	492	11,616,120	448	10,577,280			44	1,038,840	
벌개제근		23,610	㎡	192	4,533,120	192	4,533,120					
표토제거	불도저	23,610	㎡	132	3,116,520	45	1,062,450	45	1,062,450	42	991,620	
나무식재	잣나무	5,902	주	431	2,543,762	431	2,543,762					
잔디식재	줄 떼	-	㎡	5,247	-	3,674	-	1,573	-			
계					21,809,522		18,716,612		1,062,450		2,030,460	

이상익복구설계기초내역서 (2)

공 종	규 격	수 량	단위	총 액		노 무 비		재 료 비		경 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2부 대 공												
중기운반		1	식	878,800	878,800	269,450	269,450	389,400	389,400	219,950	219,950	
				-	-	-	-		-		-	
				-	-		-		-		-	
				-	-		-		-	-	-	
계					878,800		269,450		389,400		219,950	

이상익복구설계기초내역서 (3)

공 종	규 격	수 량	단 위	총 액		노 무 비		재 료 비		경 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3.사급자재대												
잣나무	2-2-3	5,902	주	2,775	16,378,050			2,775	16,378,050			
									-			
									-			
									-			
									-			
									-			
									-			
									-			
									-			
									-			
									-			
									-			
									-			
계					16,378,050				16,378,050			

20 2:10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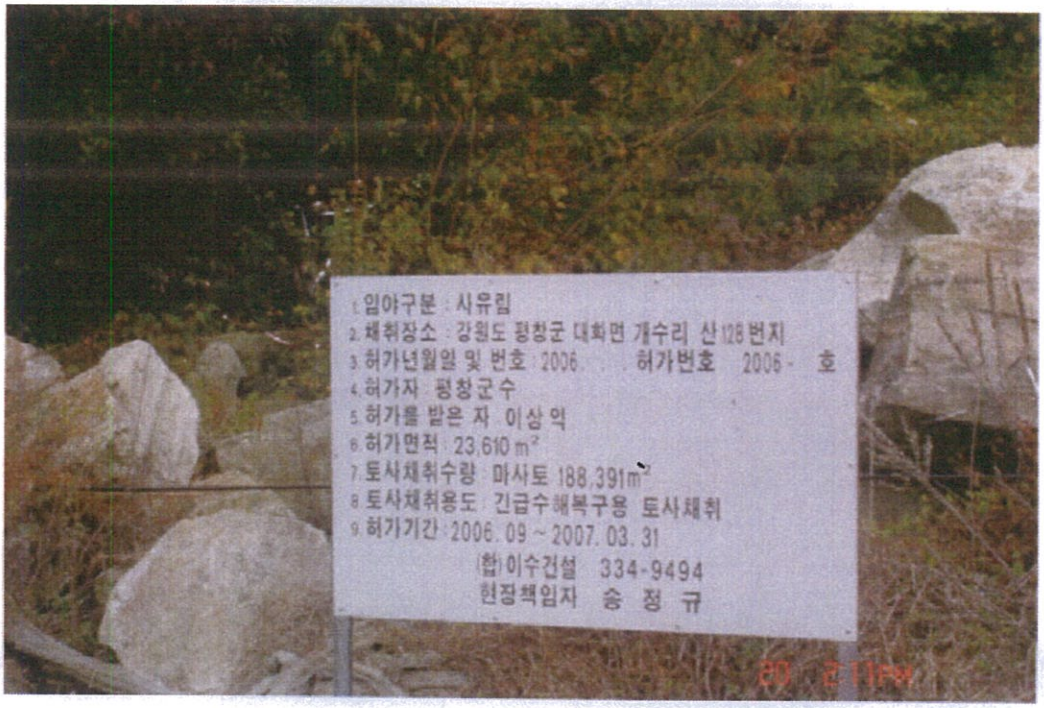
1.임야구분 : 사유림
2.채취장소 :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 산 126 번지
3.허가년월일 및 번호 : 2006. . 허가번호 2006 - 호
4.허가자 : 평창군수
5.허가를 받은 자 이삼익
6.허가면적 : 23,610 ㎡
7.토사채취수량 : 마사토 188,391㎥
8.토사채취용도 : 긴급수해복구용 토사채취
9.허가기간 : 2006. 09 ~ 2007. 03. 31
(합)이수건설 334-9494
현장책임자 송 정 규
20 2:11PM

20 2:16PM

20 2:16PM

20 2:19PM

20 2:20PM

20 2:48PM

20 2:48PM